

2019년도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5.(월요일), 15: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131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00건(안전번호 제2019-86002호~8698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계정 520건(안전번호 제2019-4874호~5393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6개 안건은 부결함(2개 안건은 부결사유가 중복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3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4쪽 저작물명, 5쪽 블로그명, 7쪽 사이트 주소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저작물명, 블로그명, 사이트 주소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2019-86002호~8698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700건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6002호~86988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6002호~8698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 영화저작물은 최근 개봉한 영화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 중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2019. 6. 12. 개봉한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2019)’이 맞고, 한글 자막파일과 함께 제공되고 있음
한편 최신 영화인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2019)’ 또한 한글 자막파일과 함께 제공되고 있음
- C 위원 : ‘밴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문저작물은 어떤 저작물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 중 실행화면을 제시하면

서) 하나의 게시물에서 여러 개의 zip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소설임

해당 밴드는 소설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는 밴드로 보호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C 위원 : 위 밴드 게시물에 대해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게시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주)에게 시정권고를 하면 네이버(주)가 불법복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게 됨

- C 위원 : 위 게시자는 상습성이 있어 보임
보호원에서는 상습성에 따라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를 하고 있는데, 밴드 이용자는 수시로 계정을 변경할 수 있음
밴드 계정을 바꾸게 되면 복제·전송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정정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지금까지 보호원에서 밴드 이용자에 대한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 밴드의 불법복제물 게시자의 경우 밴드 내 닉네임은 언제든지 임의로 변경 가능한데, 상습적인 불법복제물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지, 계정정지가 가능한지를 보호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포털사이

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폰트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임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모두 데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6002호~8698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6002호~8698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4874호~5393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5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6개 안전(2개 안전은 부결사유가 중복됨)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12.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